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이사장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20○○. ○. ○.에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"이사 ◎◎◎를 해임하고 ◎◎◎를 이사에 선임한다."는 취지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입니다.
- 2. 피고회사는 20〇〇. 〇. 〇〇.자로 각 주주에 대하여 일시, 장소 및 임시주주총 회를 개최할 취지의 통지를 발하였습니다.
- 3. 그리고 이 임시주주총회에서 "이사 ◎◎◎를 해임하고 ◎◎◎를 이사에 선임한다."는 결의를 하였습니다. 그러나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일

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함께 제363조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20 이. 이. 발송한 것은 적법한 기간을 두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.

4. 따라서 원고는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법정기간인 2월내에 위와 같은 주주총 회결의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본점소재지의 지방 법원(상법 제376조, 제186조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1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기 타	·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, 주주명부상의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(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판결).

#### ※ (1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